일방적 착오와 알고리즘 거래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싱가포르의 법리

싱가포르의 일방적 착오에 관한 법리는 *Chwee Kin Keong v Digilandmall* 판결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본질적 조건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커먼로상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착오에 빠지지 않은 당사자가 그 착오를 추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비양심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는 형평법상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1] Quoine은 B2C2가 시장 시세의 250배 가격으로 체결한 거래가 바로 이러한 착오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어느 당사자에게도 인간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사람의 개입 없이 프로그래밍된 대로 실행되는 결정론적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경우 문제되는 의사 상태는 프로그래머의 것이며, 프로그래밍 시점부터 계약 성립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은 프로그래머가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해당 가격의 청약이 착오에 빠진 당사자에 의해서만 승낙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알고리즘이 그러한 착오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 여부입니다.[2] B2C2의 프로그래머는 시장 데이터가 끊기더라도 알고리즘이 헐값에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이더 1개당 10비트코인이라는 극단적인 '안전장치(fail-safe)' 가격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는 Quoine의 플랫폼이 이러한 주문을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오작동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착오 항변은 커먼로상으로는 실제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형평법상으로는 추정적 인식과 비양심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3] 맨스(Mance IJ) 국제법관은 이 쟁점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플랫폼 장애가 명백한 상황에서 시장 시세의 250배로 이루어진 거래는 착오로 인해 효력을 잃습니다.[4]

플랫폼과 트레이더에 대한 시사점

싱가포르에서는 다수의견이 현행 법리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결과가 도출됩니다. 첫째, 플랫폼은 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그러한 권리가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오작동으로 이익을 얻은 알고리즘을 운용하는 트레이더는 그 알고리즘이 착오를 이용하도록 작성된 것이 아닌 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서화된 안전장치 가격을 포함한 프로그래머의 설계상 선택은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코드 주석과 설계 문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플랫폼들은 *Quoine* 판결 이후 전통적인 거래소의 규정을 본뜬 명시적인 '오류 거래(erroneous trade)' 또는 '명백한 오류 거래(clearly erroneous transaction)'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거래는 짧은 기간 안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적법하게 편입되면 집행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오작동의 위험을 플랫폼에서 오작동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므로, 트레이더는 거래 플랫폼을 선택할 때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사례

싱가포르의 한 자기매매 회사가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에서 마켓메이킹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간 03시 14분, 거래소의 가격 피드가 90초 동안 중단됩니다. 회사의 알고리즘은 안전장치 로직에 따라 시장 가격의 0.1% 가격으로 이더 400개를 매수합니다. 매도인은 붕괴하는 호가창에서 손절매 주문이 발동된 리테일 고객입니다. 온보딩 시 승낙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은 거래소 약관에는 기준가격에서 20% 이상 벗어나 체결된 거래를 30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를 취소합니다. 회사에는 아무런 청구권이 없습니다. 만약 약관에 그러한 조항이 없었다면, 리테일 고객이 회사의 프로그래머가 피드 장애를 이용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사는 *Quoine* 판결에 따라 이더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리테일 고객의 구제수단은 손절매 메커니즘을 운영하면서 거래소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거래소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

1. *Chwee Kin Keong v Digilandmall.com Pte Ltd* [2005] SGCA 2, [30]–[80]단락. 레이저 프린터 가격 오표시 사건. ↩
2. *Quoine* [2020] SGCA(I) 02, [97]–[99] 및 [103]–[109]단락. ↩
3. *Quoine* [2020] SGCA(I) 02, [128]단락. ↩
4. *Quoine* [2020] SGCA(I) 02, 착오 쟁점에 관한 Jonathan Mance IJ의 반대의견.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